

# 학 칙

개정 2018.01.29. 개정 2018.09.11. 개정 2019.01.24. 개정 2019.04.24. 개정 2019.06.11.  
 개정 2019.07.25. 개정 2020.01.30. 개정 2020.04.07. 개정 2020.09.03. 개정 2021.01.29.  
 개정 2021.05.06. 개정 2021.08.09. 개정 2022.02.21. 개정 2022.08.22. 개정 2022.12.16.  
 개정 2023.02.03. 개정 2023.08.11. 개정 2024.02.02. 개정 2024.12.12. 개정 2025.08.12.  
 개정 2025.12.11. 개정 2026.02.12. 개정 2026.04.02.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혜전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1.>

### 제1조의 2 (교육목적)

혜전대학교는 전문적 학술과 실무기능을 연마하고, 인격과 직업정신을 함양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7.12.11.>

### 제2조 (명칭)

본교는 혜전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04.20.>

###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에 둔다.<개정 2012.04.20., 2020.01.30.>

###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① 본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1.12.07.><개정 2020.09.03. ><개정 2020.09.22.>
- ② <삭제 2024.02.02.>

### 제4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신설 2024.02.02.>

- ① 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또는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5]와 같으며, 학칙 제4조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정한다.
-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④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의3 (정원의 전담학과 설치) &lt;신설 2024.02.02.&gt;

- ① 본교에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의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원의 전담학과 및 입학정원은 학칙 제4조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정한다.
- ③ 정원의 전담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의4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lt;신설 2025.08.12.&gt;

- ① 본교에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학칙 제4조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정한다.
- ③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 (수업연한)

- ① 본교 설치학과의 수업연한은 [별표1]을 따른다. <개정 2011.12.07., 2013.02.26., 2017.06.07., 2019.06.11., 개정 2020.09.03., 개정 2024.02.02.>
-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별표4]를 따른다. <개정 2024.02.02.>
- ③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별표5]를 따른다. <신설 2024.02.02.>
- ④ 정원의 전담학과의 수업연한은 [별표6]을 따른다. <신설 2025.08.12.>
- ⑤ 전문기술 석사 과정의 수업연한은 [별표7]을 따른다. <신설 2025.08.12.>

## 제5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수업연한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3.>

## 제6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 제8조 (학기)

- 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 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19.06.11.>

####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을 실시하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04.07.>

#### 제10조 (휴업일)

-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08.03.01.>
  2. 삭제 <개정 2008.03.01.>
  3. 개교기념일<개정 2019.01.24.>
  4. <삭제 2019.01.24.>
  5. 법정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개정 2019.01.24.>
- ② 개교기념일(4.30)의 휴업은 5월 1일로 하며,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개정2021.05.06.>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하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10.09.01., 2014.12.03.>

#### 제13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모집시 공고하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종합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면접, 신체검사, 실기고사, 적성검사 등의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구체적 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고등교육법 제40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해당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의2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3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 ① 본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조에서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를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간 취득학점은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 선발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4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전문신설 2015.04.23.>

-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08.12.>

제15조의2 <삭제 2019.01.24.>

제15조의3 (입학허가의 취소) <신설 2022.02.21.>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외 입학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제16조 (편입학)

-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편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전문개정 2011.12.07., 2025.08.12.>

#### 제16조의2 (전과)

-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과 범위는 전과대상 학과의 교과목 이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학과별 (전출학과, 전입학과 기준) 입학정원의 30% 이내 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4.23., 2024.02.02., 2026.02.12.>
- ③ 전과한 자의 기취득학점은 총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04.23.>
-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 석사 과정, 산업체 위탁 교육 입학생은 전과할 수 없다.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02.12.>

#### 제17조 (재입학)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12.07.>

#### 제18조 (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

-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장 휴학, 자퇴 및 제적

#### 제19조 (휴복학)

-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4.04.24.>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1.>
- ③ 휴학기간은 창업, 군 휴학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회(휴학 중 재휴학 포함)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2.07., 2014.04.24., 2024.02.02.>

-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2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07.>

#### 제21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①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삭제> <개정 2022.08.22.>
- ③ <삭제> <개정 2022.08.22.>
- ④ 타교에 입학한 자
- ⑤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⑦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또는 통상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개정 2010.09.01.>

## 제6장 교과 및 수업

#### 제22조 (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필수, 교양, 전공필수, 전공,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교양필수교과 포함)10%~20%, 전공교과(전공필수, 교직교과 포함) 80%~90%로 한다.<개정 2011.12.07., 2013.02.26.>
- ② 본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개정 2013.01.16., 2013.02.26., 2013.05.08., 2021.08.10. 2022.02.21>
- ③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되 교양교과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3.02.26., 2013.05.08.>
- ④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4.23.>
- ⑤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나노디그리(nano degree)'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08.22.>
- ⑥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주말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 제22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별표4]와 같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2.02.>

제22조의3 (산업체위탁교육)

- ① 산업체위탁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05.>
- ② 삭제 <개정 2013.12.05.>
- ③ 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4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 및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9.22.>

제23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 ① 본교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3조의2 (전공심화과정운영)

- ① 본교에서는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7.12.11.>
- ③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① 본교에서는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 선발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③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 (주문식 교육 운영)

-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주문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문식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5 (국대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위과정에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11.>

-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정 2010.09.01.>

#### 제24조 (교과이수단위)

-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1.29., 2019.01.24.>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학과 72학점, 3년제 학과 110학점, 4년제 학과 130학점이며 교양필수, 전공필수교과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1.12.07., 2013.02.26., 2019.01.24., 2023.02.03., 2024.02.02.>
- ③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 또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07., 2014.01.21., 2014.12.03., 2025.12.11.>
- ④ 계절 학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03.>
- ⑤ 현장실습 학점은 계열(학과)의 특성에 따라 2-3학점으로 하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2.02.21.>
- ⑥ <삭제 2019.01.24.>
- ⑦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학생,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야간학생은 교양교과에 대하여 졸업을 위한 이수 기준 및 최소 이수학점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 <개정 2010.09.01., 2024.02.02.>
- ⑧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적대학 인정 학점포함 1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단, 졸업학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11., 2019.01.24. 2022.02.21.>

#### 제24조의1 (학점인정)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04.07.>
- ② 편입학 학생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6.>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③ 진로탐색활동 학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08.09.>
- ④ 자격기본법 제2조 4호(국가자격)에 해당하는 기능장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실기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③ →④항 이동 2021.08.09.>
- ⑤ 교육과정에 국내외 인턴십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④ →⑤항 이동 2021.08.09.>
- ⑥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2.07.><⑤ →⑥항 이동 2021.08.09.>

#### 제25조 (수업 및 시간)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하고 08:00부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25조의1 (교수시간)

-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7.25.>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6조 (평가시험)

-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과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04.23.>

#### 제27조 (성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평점 방법		
배점	등급	평점
100 - 95	A+	4.5
94 - 90	A	4.0
89 - 85	B+	3.5
84 - 80	B	3.0
79 - 75	C+	2.5
74 - 70	C	2.0
69 - 65	D+	1.5
64 - 60	D	1.0
59 - 0	F	0
불계	P	

-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성적평가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의2 (석차)

- ① 석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출한다.<개정 2015.12.10.>
  1. 전 과목 평점평균 상위자
  2. 전 과목 백분율 상위자
  3. 전공과목 백분위 상위자<개정 2013.02.26.>
  4. 교양과목 백분위 상위자<개정 2013.02.26.>
  5. 연장자
- ② 국내외 인턴십을 이수하는 학생의 해당 학기석차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체학기 석차는 인턴십 학기를 제외한 성적으로 산출한다.<신설 2015.12.10.>
- ③ 사회봉사나 P/F과목만 이수하는 학기의 석차도 ②항과 같이 해당학기에는 제외하고 전체학기에는 해당학기를 제외한 성적으로 산출한다.<신설 2015.12.10. 2022.02.21.>
- ④ 일반선택 과목은(전과 학생 학점인정 과목, 타 계열(학과) 수강 과목) 전공과목으로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04.07.>

#### 제28조 삭제

#### 제29조 (성적의 취소)

- ① 이미 지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 ② 삭제 <개정 2018.01.29.>

#### 제30조 (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졸업 및 수료)

- ① 본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학위의 종류 및 학위명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간호학과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학위의 종류 및 학위명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1.12.07., 2018.09.11.>

- ②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학위의 종류 및 학위명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07., 2018.09.11.>
-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별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09.15., 2017. 12.11., 2019.01.24., 2023.02.03., 2024.02.02.>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36	38	35
2학년	72	75	70
3학년		110	105
4학년			130

-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8항에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학위의 종류 및 학위명칭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12.07., 2018.09.11.>

제31조의2 (졸업종합시험)<개정 2020.01.30.>

- ①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계열(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01.30.>
- ② 졸업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07.><개정 2020.01.30.>

제31조의3 (학위의 취소)

총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5.04.23.>

제31조의4 (학위취득 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02.21.>

제32조 (학사제적) 삭제

## 제8장 학생활동

### 제33조 (학생회 조직)

- ① 학생자치활동의 신장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본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본회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34조 (학생회비)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5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제37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 ①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 ②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③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④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제39조 (간행물의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 (처벌)

본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제9장 규율과 상벌

### 제41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힘으로써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2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3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44조 (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제44조의2 (성희롱 예방)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장 등록금

### 제45조 (등록금)

-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한 등록금중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9.>
- ③ 등록금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납부 연기 및 분납을 할 수 있다.

제45조의1 (등록금심의위원회)

- 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29.>

제46조 (등록금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장 장학금

제47조 (장학금)

-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삭제 <개정 2017.01.24.>
- ③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2.07.>

## 제12장 교수회, 대학평의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제48조 (구성)

- ①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본교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두며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③ 본교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④ 본교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2.02.>

제49조 (소집 및 심의)

-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교수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 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교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교수회, 대학평의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2.02.>

## 제13장 직 제

### 제50조 (교직원)

- ① 본교에는 총장, 부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사무 직원을 둔다.<개정 2013.02.26. 2019.07.25.>
- ② 교직원의 임무에 관하여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제50조의2 (겸임교원 등)

- ① 본교에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7.25.>
-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조의3 (강사) <신설 2019.07.25.>

- ① 제50조 1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1조 (직제)

- ① 본교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처, 글로벌대외교류처, 총무처, 산학협력센터 등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개정 2016.04.18., 2019.04.24., 2020.04.07., 2022.02.21., 2024.02.02., 2026.04.02.>
- ② 각 부서에 부서장을 보하며,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부서 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 제51조의2 (산학협력단)

- ① 본교에 산학연협력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촉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4.24.>
-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삭제 2022.02.21.>

### 제51조의3 (평가)

- ①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규정에 의한다.<조문신설 2010.04.22.>

## 제14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52조 (부속기관) <개정 2011.09.08.> <개정 2012.04.20.> <개정 2016.04.18.> <개정 2017.01.24.> <개정 2019.04.24.> <개정 2021.05.06.> <개정 2021.08.09.>

- ① 본교는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을 둔다.
  - 1. 학술정보원 <개정 2019.04.24.>
  - 2. 평생교육원 <개정 2019.04.24.>
  - 3. 인권센터 <개정 2019.04.24., 2021.08.09., 2022.02.21.>
  - 4. 해전방송국 <개정 2019.04.24.>
  - 5. <삭제 2021.05.06.>
  - 6. <삭제 2019.04.24.>
  - 7. 식품산업연구소 <개정 2021.01.29., 2022.02.21.>
  - 8. 산업기술연구소 <개정 2021.01.29., 2022.02.21.>
  - 9. 인문사회연구소 <신설 2022.02.21.>
- ② <삭제 2019.04.24.>
  - 1. <삭제 2019.04.24.>
  - 2. <삭제 2019.04.24.>
- ③ <삭제 2019.04.24.>
  - 1. <삭제 2019.04.24.>
  - 2. <삭제 2019.04.24.>
  - 3. <삭제 2019.04.24.>
- ④ <삭제 2019.04.24.>

제52조의 2(학교기업)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5.09.15., 2019.04.24., 2020.01.30., 2020.09.22>

구분	학교기업명칭	관련학과	사업 종목	설치장소
1	해전베이커리	제과제빵과	생산 판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2	해전카페테리아	호텔조리외식계열	생산 판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3	해전푸드트럭	외식창업조리과	생산 판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 ②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③ 현장실습학기, 학점, 이수 단위 등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04.20.>

## 제15장 학칙 제 개정 절차

제53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07.>

제54조 (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12.07., 2019.06.11.>

제55조 (의견제출 및 처리)

- ① 본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10.>
-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12.07.>

제56조 (심의 및 공포)

- ①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신설 2011.12.07.>

## 제16장 보 칙

제57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의2 (학칙변경)

- ① 이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대학평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삭제 <개정 2013.08.06.>

제58조 <제22조의 3으로 옮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1041 - , 1981.12.0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1041 - 583, 1982.10.0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전행1041-475, 1983.09.1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조 제 3항 및 제 24조 제 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전학 1040-1983.12.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학 1040-1984.03.0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전학 1020-1984.08.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5학년도 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전행 1041-583, 1984.1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학 25412-702, 1985.10.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6학년도 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6 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전행 25413-427, 1985. 10.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52조)<전행 25410-26, 1986.01.23.>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2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간호과의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의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전행 25413-43, 1988.01.27.>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25413-664, 1988.12.31.>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25413-484, 1990.11.13.>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25412-568, 1991.12.20.>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25413-480, 1992.10.06.>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전학 81412-575, 1993.08.21.>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81413-662, 1993.09.1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행 81401-731, 1993.10.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리과, 상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각각 호텔조리과와 시각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4조)<전학 81412-103, 1995.03.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의 개편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소속 변경)

학과명이 변경된 비서행정과, 관광과, 중국어과 소속된 재적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학과 명칭이 변경된 행정과, 호텔경영과, 관광중국어통역과의 소속으로 본다.<전학 81412-482, 1995.12.1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4조 제6항)<전학 81412-204, 1996.04.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7조, 제19조)<전학 81412-308, 1996.07.08.>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의 개편에 따른 교원 및 학생소속 변경)

학과명이 변경된 염색제직과, 출판과, 전산정보처리과, 법률과에 소속된 교원과 재적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학과명칭이 변경된 섬유과, 전자출판과, 전자계산과, 행정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교명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혜전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혜전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공업화학과, 무역과, 세무회계과, 영어과, 관광중국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학과명칭이 변경된 신소재응용화학과, 무역전산실무과, 세무회계정보과, 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계열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 또는 학과통합 및 계열부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 하지 못하는 자는 아래 명칭 변경된 학과 및 계열부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섬유과 공업경영과 전자계산과, 컴퓨터서비스과 전자과, 전자회로실무과 신소재응용화학과 행정과(야) 호텔제과제빵과 의상디자인과 세무회계정보과 호텔경영과, 관광영어과 여성교양과 도자기공예과	생활섬유과 산업시스템경영과 컴퓨터계열 전자계열 환경신소재과학계열 행정전산과(야) 호텔제과제빵계열 패션디자인과 세무회계정보처리과 호텔관광경영과 아동복지과 도자디자인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 학과명칭 변경 및 계열부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아래 명칭 변경된 학과 및 계열부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섬유과, 텍스타일디자인과 환경신소재과학계열 호텔제과제빵계열 세무회계정보처리과	패션섬유계열 환경신소재계열 제과제빵계열 경영정보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전산실무과, 전자계열, 환경신소재계열, 패션비즈니스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전자상거래과, 신소재전자계열, 패션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컴퓨터계열, 제과제빵계열, 행정전산과, 전자출판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컴퓨터 멀티미디어계열, 호텔제과제빵과, 행정과, 출판미디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명칭 변경 및 계열(학과)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명칭 변경된 학과 및 계열부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패션섬유계열	패션섬유과
신소재전자계열	환경의료재료계열
신소재전공	
신소재전자계열	전자PCB계열
전자전공	
전자디자인전공	
PCB전공	
산업시스템경영과	산업경영과
호텔조리과	호텔조리계열
외식산업과	외식경영계열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상거래과
행정과	행정전산과
도자디자인과	아동조형미술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 학과명칭 변경 및 계열부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명칭 변경된 학과 및 계열부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패션섬유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 의료정보시스템과 환경의료재료계열 전자PCB계열 인터넷상거래과 애완동물미용과	텍스타일디자인과 컴퓨터과 보건의료정보과 의료재료과 디지털전자디자인과 무역유통마케팅과 애완동물관리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의 폐과 및 폐지에 따른 특례)

폐과 및 당해연도 신입생이 없어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의 경우 제16조의 2에 불구하고 매 학기 초에 교과목 이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과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4.0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호텔조리계열 외식경영계열 경영정보과 관광중국어과 아동조형미술과 언어교정과	호텔조리외식계열  무역유통마케팅과 호텔관광중국어과 아동복지과 언어재활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패션디자인과 경영정보과 아동조형미술과 관광중국어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무역유통마케팅과 아동복지과 호텔관광중국어과

제3조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로 수업연한을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 ③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업연한이 변경된 과도 이 경과조치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컴퓨터과 의료재료과 피부미용과	인터넷보안과 소방안전관리과 미용계열

디지털전자디자인과 재적생은 휴학당시 소속 반이나 반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은 본인

선택에 따라 디지털전자과, 전자CAD과중 학과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아동복지과 행정전산과	사회복지계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국방전자부사관과	전문사관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연한 4년제 인가에 따른 경과조치)

간호학과의 경우 수업연한 3년제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2012학년도에서 2014학년도 까지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은 제24조 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2012학년도 교육과정으로 복학하는 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열 및 학과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복지행정전공	
호텔제과제빵과	제과제빵과
간호과	간호학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명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혜전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혜전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2.26.)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호과 복학생 경과조치)

간호과 입학 후 휴학하여 간호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은 3년제 또는 4년제로 수업연한을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부 칙(2013.05.0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8.06.)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의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계열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미용계열 피부관리전공 헤어디자인전공	미용과

부 칙 (2013.12.05.)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1.2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24.)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0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30.)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전공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제4조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글로벌조리전공 휴학생은 전공 전과하여 복학한다.
  - 가. 2015학년도 1학년 2학기에 복학
  - 나. 2016학년도 이후에 복학
- ③ 현 글로벌조리전공 재학생은 2015학년도 후기 졸업 때까지 글로벌조리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2015.04.2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9.15.)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석차는 2015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1.2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의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계열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	-----

디지털서비스과	전기전자서비스과
---------	----------

부 칙 (2016.04.1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24.)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무역유통마케팅과	유통경영과

부 칙 (2017.06.07.)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8학년도 신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의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단, 호텔조리외식계열(외식경영전공) 복학대상 학생은 호텔조리과나 조리외식창업과 중 선택하여 복학 할 수 있다.

종 전	변 경
호텔관광경영과 호텔조리외식계열(외식경영전공)	조리외식창업과
호텔조리외식계열(서양식전공, 한식전공, 중식전공, 일식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음료경영전공)	호텔조리과
디지털전자과, 전자CAD과	전기과

제4조 (보건의료정보과 복학생 경과조치)

보건의료정보과 입학 후 휴학하여 2018학년도 이후에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와 2019학년도 이후에 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2년제 또는 3년제로 수업연한을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2017.12.1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조의2(전공심화과정운영), 제24조(교과이수단위), 제31조(졸업 및 수료)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의 ③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1.2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9.1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통합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학년도 (2020.08.31.)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호텔조리과 조리외식창업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조리외식계열

단, 전공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0학년도 (2021.08.30.)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언어재활과	언어치료과

부 칙 (2019.01.24.)

제1조 (시행일)

2019년 01월24일 자로 개정된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 및 수료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기준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졸업 및 수료학점을 적용한다.<개정 2020.04.07.>

제3조 (수업연한 변경학과 졸업 및 수료학점 경과조치) <신설 2022.12.16.>

- ① 수업연한 변경학과의 졸업 및 수료학점은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졸업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수업연한 변경학과의 전공교과 졸업학점은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졸업학년도 기준을 적용하며, 교양교과 졸업기준은 입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03.1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사회복지과, 전기과에 입학 후 휴학하여 2020학년도 이후에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와 2021학년도 이후에 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2년제 또는 3년제로 수업연한을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4조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변경으로 인터넷보안과는 2020학년도(2021.08.30.) 말까지, 보건의료정보과는 2021학년도(2022.08.30.) 말까지 정당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인터넷보안과 보건의료정보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보건의료행정과

부 칙 (2019.07.2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30.)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는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07.)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0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 전	변 경
호텔조리외식계열 (서양식전공, 한식전공, 중식전공, 일식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음료경영전공), 호텔조리과	호텔조리계열
호텔조리외식계열 (외식경영전공, 외식창업조리전공)	외식창업조리과

학과의 명칭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1학년도 (2022.08.31.)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4조 (모집정지 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모집정지로 아래 종전의 학과에 입학하여 2021학년도 이후에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와 2022학년도 이후에 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서비스과
조리외식창업과	외식창업조리과

제5조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과제빵과에 입학 후 휴학하여 2021학년

도 이후에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와 2022학년도 이후에 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2년제 또는 3년제로 수업연한을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2020.09.2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2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5.06.>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8.0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2.21.>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실습 이수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22.08.2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통합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2022학년도 후기(2023.08.31.)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전기전자서비스과	전기과(2)

제4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2023학년도 후기(2024.08.31.)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애원동물관리과	반려동물토탈케어과

부 칙 <2022.12.16.>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0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 및 수료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 제3항의 졸업 및 수료학점에 대한 변경 기준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2019학년도 이전(학점)			2023학년도 이전(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40	40	35	38	38	35
2학년	80	80	70	75	75	70
3학년		120	105		110	105
4학년			140			138

부 칙 <2023.08.1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업연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과 3년제 재적생의 수업연한은 입학당시 수업연한으로 한다. 3년제 복학생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되,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수업연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2024학년도 후기(2025.08.31.)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애원동물관리과 반려동물토탈케어과	반려동물과

부 칙 <2024.02.0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 및 수료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졸업 및 수료학점에 대한 변경 기준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년제	3년제	4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40	40	35	38	38	35	38	38	35
2학년	80	80	70	75	75	70	75	75	70
3학년		120	105		110	105		110	105
4학년			140			138			130

제3조 (교양교과 이수 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양교과 이수 단위 기준은 2024학년도부터 모든 야간학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24.12.1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업연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과 재적생의 수업연한은 입학당시 수업연한으로 한다. 3년제 복학생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되,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수업연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학과에 소속한 학생 중 2025학년도 후기(2026.08.31.)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농축산식품융합과	스마트팜식품융합과

부 칙<2025.08.1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12.1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02.1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4.02.>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제 00000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0 0 0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000000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 과 :

0000년 0월 00일

혜전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혜전0000-0000

제 00000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0 0 0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000000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계열 :

전공 :

0000년 0월 00일

혜전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혜전0000-0000

(별지서식 제2호)

제 00000 호

# 수료증서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과 0학년 소정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계열(학과) :

전공 :

0000년 0월 00일

혜전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별지서식 제3호)

제 00000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0 0 0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0000000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함.

학 과 :

0000년 0월 00일

혜전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학위등록번호 : 혜전학사0000-0000

## [별표 1]

<개정 2011.12.07., 2013.02.26., 2013.08.06., 2014.01.21., 2015.01.30., 2016.01.29. 2017.01.24., 2017.06.07., 2018.09.11., 2019.06.11., 2020.09.03., 2021.08.10., 2022.08.22., 2023.08.11., 2024.02.02., 2024.12.12., 2025.08.12.>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설치학과(계열)	수업 연한	주/야	입학정원		
				2024	2025	2026
공학	소방안전관리과	2	주	25	20	20
	전기과	2	주	50	55	55
인문 사회	사회복지과	2	주		50	50
		3	주	30		
	사회복지과(야)	3	야	20		
	유아교육과	3	주	35	30	30
	유통경영과	2	주	25	25	25
	호텔관광서비스과	2	주	30	35	33
	한국어과	2	주		25	30
자연 과학	간호학과	4	주	152	162	162
	농축산식품융합과	2	주	20		
	스마트팜식품융합과	2	주		20	20
	반려동물과	2	주	45	38	30
	보건의료행정과	3	주	20		
	외식창업조리과	2	주	25	25	25
	임상병리과	3	주	35	35	30
	작업치료과	3	주	35	35	30
	제과제빵과	3	주	135	127	127
	치기공과	3	주	30	30	30
	치위생과	3	주	50	50	45
	호텔조리계열	2	주	120	120	110
	자율전공학과	2	주			20
	계			882	882	872

[별표 2] 전문학사 학위명

<개정 2011.12.07., 2013.02.26., 2013.12.05., 2015.09.15., 2016.01.29., 2016.12.14., 2018.01.29. 삭제 2018.09.11.>

[별표 3] 학사 학위명

<개정 2011.12.07., 2013.05.08., 2013.12.05., 삭제 2018.09.11.>

[별표4] <신설 2024.02.02.><개정 2024.12.12., 2025.08.12., 2025.12.11.>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설치학과(계열)	수업 연한	주/야	입학정원		
				2024	2025	2026
인문 사회	유아교육학과	1	야	25	25	20
자연 과학	제과제빵학과	1	야	20	20	20
	치위생학과	1	야	15	15	15
	임상병리학과	1	야			15
	전기공학과	2	야			20
계				60	60	90

[별표5] <신설 2024.02.02.><개정 2024.12.12., 2025.08.12.>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설치학과(계열)	수업 연한	주/야	입학정원		
				2024	2025	2026
자연 과학	한식조리과	1.5	주	15	20	
	K-푸드조리과	1.5	주			15
	서양식조리과	1.5	주	15	20	
	일식조리과	1.5	주	15	20	15
	중식조리과	1.5	주	15		
	베이커리카페과	1.5	주		30	25
2.5		주	30			
계				90	90	55

[별표6] <신설 2025.08.12.><개정 2026.04.02.>

### 정원의 전담학과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설치학과(계열)	수업 연한	주/야	입학정원	비고
				2026	
예체능	파크골프지도과	2	주	30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계				30	

[별표7] <신설 2025.08.12.>

## 전문기술 석사 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설치학과(계열)	수업연한	입학정원
			2026
자연 과학	스마트푸드첨단 베이킹융합기술	2	10
계			10